

■ 법률 칼럼

취업이민과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취업이민 절차를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미연방 노동부 (U.S. Labor Department)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적임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미연방 노동부는 신청자의 직위 (Job title), 학력 그리고 경력 (Job Experience) 등을 고려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직위 (Job title/position)에 적절한 정적임금을 책정합니다. 이 때 결정된 정적임금은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이민 청원서를 제출하는 스폰서 회사는 적정임금을 지불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 (Ability to Pay) 이 노동승인서 (L/C)가 접수되는 시점부터 영주권 심사가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I-140 청원서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폰서 회사는 영주권 신청인이 영주권을 받은 시점부터 이 적정임금만큼의 급여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영주권 신청인이 취업비자 등으로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영주권 승인 전에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고용주는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정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회사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증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신청인들은 스폰서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이 세금보고서를 통해서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취업이민 신청자 분들이 이 간단한 절차를 무시하고 스폰서의 재정능력을 검토하지 않으시고 이민을 진행하시다가 낭패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미리 검토해서 그 자격 여부를 미리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재정 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스폰서회사의 순이익 (Net Income)이나 순자산 (Net Asset)이 책정된 적정임금보다 높으면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비자 등으로 이미 스폰서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이미 그 적정임금 수준의 봉급을 받고 계시다면 그 영주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고학력을 요구하는 2순위 직종의 적정임금 수준이 3순위보다 높습니다. 그러므로 2순위 이상의 취업 스폰서가 되는 회사는 회사 재정 능력이 상당히 높아야 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이나 학사와 그 전공 분야의 5년 경력을 가지고 취업이민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순위 취업이민의 경우도 영주권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스폰서 회사의 재정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뇌기능의 전반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모든 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원인 미상의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생기는 혈관성 치매가 20~30%, 기타 원인으로 인한 치매가 10~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현재 주로 사용 중인 치매 치료약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분해시키는 효소를 억제시키는 약물(도네페질)과 NMDA 수용체 길항제(메만틴)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두카누맙이 18년 만에 새로 나온 치매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긴 하였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여서 생기는 것인데, 아두카누맙이 이 아밀로이드를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임상적으로 환자의 증상 호전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혈관성 치매는 대개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흡연 등이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이 위험 인자들을 잘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의 혈류 순환을 개선하고, 뇌세포 대사를 촉진 시켜서 뇌신경 전달 물질이 잘 작용될 수 있도록 돋기 때문에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당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과 함께 날마다 맞추기, 퍼즐, 그림 그리기 등의 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ero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설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자연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월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자연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자연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자연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자연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설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 자연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698	\$2,288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무료 상담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 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 714.872.9377

